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공 람 | 기 관 의 장 |
| | |

공 보

제 1118 호 2018. 5. 3. (목)

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15호[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] 2

훈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48호[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] 5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105호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] 8

안내

-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
회람

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

장 우 근



2018년 5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15호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선거구 순서”를 “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다음을 신설한다.

다만,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. 그러나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.

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,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접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

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.

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된 사항을 수렴하여 그간의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 정비(안 제3조)
 - “지역선거구 순서” → “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”
- 나. 체포·구금 관련 청가 특례 신설(안 제7조)
 - 의원의 체포 ·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
- 다. 의장·부의장 선거 및 임기 정비(안 제8조 및 제9조)
 -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 명확화
- 라. 의안의 제출방법 설정(안 제19조의3)
 -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함

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박 천 동



2018년 5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48호

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매년 연봉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되, 인상률은 조정할 수 있다.

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등급 및 연봉 기준표(제11조, 제12조 관련)

| 구분 | 등급 | 연봉(천원) | 책정기준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감독 | 1등급 | 35,000~40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영 국가대표 5년 이상의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○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(수영) ○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 3년 이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| |
| | 2등급 | 30,000~35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영 국가대표 3년 이상의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○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(수영) ○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 2년 이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| |
| 코치 | 1등급 | 28,000~32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(수영) ○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 2년 이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| |
| | 2등급 | 24,000~28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(수영) ○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○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| |
| 선수 | 1등급 | 24,000~36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한 사람 | |
| | 2등급 | 21,600~32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시안게임 입상한 사람 ○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 이상 입상한 사람 | |
| | 3등급 | 19,200~28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○ 전국대회에서 3회 이상 우승한 사람 | |
| | 4등급 | ~24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별 영입이 필요한 사람 | |

* 선수등급 산정 시 : 1년 이내 성적에 한함. 다만, 매년 개최되지 않는 대회의 경우 직전 대회 성적으로 힘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장애인수영 운동 경기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우수선수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

2. 주요내용

| 개정사항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등급 및 연봉 기준표 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정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수 등급 기준 및 연봉을 조정하여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 • 세부내역 : 붙임참조 |
| 연봉인상률 설 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정사유 : 현재 등급 기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,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수 조정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. • 규정내용 <p>제11조(보수 등) ① 보수는 별표 1, 2에 의하여 지급하며, 연봉액의 1/12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 다만 지급일이 토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②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매년 연봉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되 인상률은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※ 자치단체별 장애인수영부 보수 인상률 규정 현황</p> <p>충청북도 : 공무원 보수 인상률 고려, 인상률은 조정 가능</p> <p>대전시 :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다른 실업팀의 연봉액을 고려</p> <p>제주시 : 호봉제, 부산시 : 별도규정없음</p> |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8 - 105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외 1인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번지 외 44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·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사업계획승인내역 : 【붙임1】 참조

2018년 5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【붙임1】

1. 사업계획 승인내역

| 구 분 | 승인내역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사업명칭 |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| | | | | | |
| 사업위치 |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번지 외 44필지 | | | | | | |
| 사업주체 |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외 1 | | | | | | |
| 사업주체주소 |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, 3층(진장동) | | | | | | |
| 대지면적 | 29,169m ² | | | | | | |
| 건축면적 | 10,596.838m ² | | | | | | |
| 연 면 적 | 32,241.0618m ² | | | | | | |
| 건폐율/용적률 | 36.33% / 90.27% | | | | | | |
| 총수/동수/세대수 | 지하 1층, 지상 5층 / 주 : 22개동, 부속 : 7개동 / 264세대 | | | | | | |
| 사업규모 | 형별 | 세대수 | 전용면적 | 공용면적 | | | |
| | 76A | 191 | 76,2320m ² | 20,3500m ² | | | |
| | 76B | 1 | 76,2320m ² | 96.5820m ² | | | |
| | 84A | 71 | 84,8140m ² | 22,3263m ² | | | |
| | 84B | 1 | 84,8140m ² | 107.1403m ² | | | |
| | 계 | 264 | | 107.1426m ² | | | |
|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| 구 분 | 합 계 | | | | | |
| | 관리사무소 | 54,992m ² | | | | | |
| | 경비실 | 34,874m ² | | | | | |
| | 전기/기계실 | 194.68m ² | | | | | |
| | 재활용품 보관소 | 24.39m ² | | | | | |
| | 작은 도서관 | 96,768m ² | | | | | |
| | 경로당 | 93,456m ² | | | | | |
| | 주민공동시설 | 692,614m ² | | | | | |
| | 어린이놀이터(3개소) | 524.06m ² | | | | | |
| | 조경시설 | 7,637.78m ² (26.18%) | | | | | |
| 사 업 비 | 73,568,000천원 | | | | | | |
| 사업기간 | 2018. 06. ~ 2020. 04. | | | | | | |

2.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 등

건축법 제11조 『건축허가』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,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3. 승인관련 서류 : 북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(☎241-80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